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 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0,421,068	21,012,632
일반회계	633,205,278	18,996,158
특별회계	67,215,790	2,016,474
공기업특별회계	34,888,614	1,046,6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982,415	629,4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906,199	417,186
기타특별회계	32,327,176	969,8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371,100	281,13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39,370	79,18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43,178	10,29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55,908	25,677
사전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4,462,000	133,8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3,000	6,690
도시개발특별회계	1,510,000	45,3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45,000	10,350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596,514	17,895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1,929,000	57,87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072,000	92,160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6,980,106	209,40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55,77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회계연도 종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을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